

● 제302회 ●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 식품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 2645)

2021. 9. 8.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박기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645

I. 조례안 개요

1. 제안경위

- 가. 제 출 자 : 박기재 의원 외 14인
- 나. 제출일자 : 2021년 08월 11일
- 다. 회부일자 : 2021년 08월 18일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 상위법인 「식품안전기본법」 제5조의2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식품안전의 날 및 식품안전주간과 관련하여 기념행사와 더불어 식품안전 관련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음.
- 이에 근거해 식품안전의 날 및 식품안전주간 운영에 관한 내용을 조례로 명시해, 시민들에게 식품안전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식품안전의 날 및 식품안전주간을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함. (안 제9조의2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안전기본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참조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첨부)

Ⅲ.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이문성)

1 개정안의 취지

- 본 개정안은 식품안전의 날 및 식품안전주간을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식품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를 높이고자 하였음.

2 개정안의 주요내용 검토

- 개정안은 상위법인 「식품안전기본법」 제5조의2¹⁾를 반영한 것으로 시장이 식품안전의 날 및 식품안전주간을 운영할 수 있고, 관련 사업을 실시하거나 관련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임.

<표>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9조의2(식품안전의 날 및 식품안전주간) ① 시장은 식품안전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법 제5조의2에 따른 식품안전의 날 및 식품안전주간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식품안전의 날에 취

1) 「식품안전기본법」 제5조의2(식품안전의 날 및 식품안전주간) ①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 및 사업자의 인식과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5월 14일을 식품안전의 날로 하며, 매년 5월 7일부터 5월 21일까지를 식품안전주간으로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식품안전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고, 관련 사업을 실시하거나 관련 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현행	개정안
	<u>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고, 관련 사업을 실시하거나 관련 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u>

- 「식품안전기본법」이 일부 개정되어(21년 7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식품안전의 날 및 식품안전주간과 관련하여 기념행사와 더불어 식품안전 관련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식품안전 관련 사업 및 활동이 보다 폭넓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이 마련된 바 있음.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5월 14일을 식품안전의 날로, 매년 5월 7일부터 5월 21일까지를 식품안전주간으로 지정하여 매년 관련된 행사를 개최하고 있음.
 - 식품안전의 날은 2002년에 처음 제정되었으며, 식품 안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식품 관련 종사자의 안전의식을 촉구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음.
 - 매년 5월은 온도가 높아지는 시기로 기온 변화로 인한 식자재의 변질가능성이 높으며, 식품 보관, 섭취, 개인위생에 관한 관리 부주의 등으로 식중독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이러한 점을 반영해 5월 14일을 식품안전의 날로 지정한 바 있음.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식품안전의 날과 관련된 행사를 주최하여 식품안전에 대한 중요성과 올바른 정보를 알림으로써 시민들에게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개선과 주의 환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의미를 가진다고 사료됨.

3 종합의견

-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식품안전기본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로 명시된 사항을 조례로 명시해 시민들에게 식품안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주의를 환기시킴으로써 시민들의 보건 의식 상향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입법적 취지를 가진다고 할 수 있음.
- 본 개정안을 통해서 식품안전의 날과 식품안전주간을 개최할 수 있는 입법적 근거가 확보되는 만큼 향후 집행부에서는 시민들의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식품 관련 종사자들의 안전 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실질적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임.

문 의 처

도미화 입법조사관 (02-2180-8147)